



의안번호	제71호
회의연월일	2026. 6. 15. (제590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6. 6. 1.

교통기획과장, 교통안전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자동차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하되,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각 1만 원을 가중하도록 정함(안 별표 6, 안 별표 7)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6호 및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만원)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7만원)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만원)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10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7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